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11-15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9누39477 재산세부과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주식회사 A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 [redacted]
	담당변호사 [redacted]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인천지방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8구합53171 판결
변 론 종 결	2019. 7. 17.
판 결 선 고	2019. 9. 25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7. 9. 6. 원고에게 한 재산세 93,480,870원, 지방교육세 14,335,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11-15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 등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('3. 결론'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)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수정 부분

○ 2쪽 아래에서 4행의 "이하" 왼쪽에 "별지 도면의 C 토지상 건물 중 음영 표시 부분이고,"를 추가

○ 3쪽 9행의 "이 사건 토지를" 왼쪽에 다음을 추가

『이 사건 공장건물에는 약 23개 업체의 임차인이 입주하여 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어 ①토지만으로는 공장운영에 필요한 원자재 적재와 제품의 운반, 상하차를 위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. 더구나 ①토지와 이 사건 토지 일대의 가운데 넓은 공터는 이 사건 공장건물과 무허가건축물 임차인들의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 사건 공장건물의 임차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공터까지 이용할 수밖에 없다. 나아가 ①토지와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출입구는 한 곳뿐이고, 이 사건 공장건물과 무허가건축물들이 서로 맞대어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장건물 입주업체 일부는 자재 및 제품 상하차를 위하여 별지 도면과 같이 출입구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진출입할 수밖에 없어 이 사건 토지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. 이처럼』

○ 4쪽 11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

『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별도합산과세 함으로써 종합합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11-15

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. 즉, 일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다른 토지의 가액과 합산하여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합산과세 방식에 의하면 토지의 정상적인 활용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 및 임대료 인상, 물가 인상, 세 부담의 전가 등의 문제가 유발될 수 있고, 이를 분리과세하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빙자한 토지의 과다보유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별도로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보다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(헌법재판소 1997. 9. 25. 선고 96헌바18 결정, 헌법재판소 2012. 4. 24. 선고 2010헌바405 결정 등 참조).』

○ 4쪽 아래에서 4행의 "갑 제7 내지 11호증(가지번호 포함), 을 제4호증"을 "갑 제7 내지 11, 17호증(가지번호 포함), 을 제4, 6호증"으로 수정

○ 4쪽 아래에서 2행의 "무허가 건축물이 있고"를 "무허가 건축물들만이 있고,"로 수정

○ 5쪽 8행의 "뿐이다)"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

『, ④ 이 사건 토지 일부가 이 사건 공장건물에 입주한 공장 일부의 원자재와 제품 등을 운반하는 차량 통로나 주차공간 등으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이는 ①토지에 이 사건 공장건물 외에 다수의 무허가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어 이 사건 공장건물 입주업체들의 진출입이 불편한 구간이 있거나 주차 및 제품 상하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, ⑤ ①토지에 무허가건축물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이 사건 공장건물 입주업체들이 이 사건 토지를 차량 통로나 주차공간 등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』

○ 8쪽 뒤에 이 판결의 별지 도면을 추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11-15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동오

판사 박재우

판사 박해빈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11-15

도면

